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 전용기의원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10
----------	-------

발의연월일 : 2025. 6. 23.

발 의 자 : 황운하 · 전용기 · 한창민
신장식 · 김준형 · 백선희
윤종오 · 박은정 · 정혜경
서왕진 · 전종덕 · 이건태
용혜인 · 김종민 · 이해민
황명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운수·승무 및 역무서비스·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포상 실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중 서비스평가 결과가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운행·운수·정비·승무 및 역무서비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② (생략)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 ----- ----- ----- ----- ----- <u>. 이 경우 포상 실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대중교통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중 서비스평가 결과가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운행·운수·정비·승무 및 역무서비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